

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적용대상 : 국가유공자(안 제2조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

나. 설치장소 :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공공시설(안 제4조)

- 「주차장법」의 노외·부설주차장, 다중이용시설은 설치 권고

다. 설치기준 : 주차면수 100대 이상인 경우 총 대수의 100분의 1이하(안 제5조)

- 주차구역 바닥면에 별도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제3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미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공자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.
2. “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”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구미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설치장소) ① 구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구미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구미시장은 「주차장법」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(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)
2.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,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위반차량 조치) 구미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별표]

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도안

1. 바닥면 도안



2. 안내표지판 도안



관계법령

□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 대상자”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,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·공헌자의 경우
2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
②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,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(이하 “전몰군경 등”이라 한다)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(제1호,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세출발생(안 제5조제2항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설치장소는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공공시설 중 주차면수가 100대 이상인 곳으로 한다.
- 100대 이상 150대 미만은 1면, 150대 이상 250대 미만은 2면, 250대 이상은 3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.
- 설치시기는 2025년 1. 1.부터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합 계	58,800					
	바 닥 면 도 색	25,200					
	안내표지판설치	33,600					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합 계	58,800					
	국 비						
	도 비						
	시 비	58,800					
	민 간						
	기 타						

5. 부대의견

본 추계결과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사 된 내역으로 산정되었으며
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공공공시설 신설·변동 및 주차시설의
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보훈선양팀 행정7급 정대용(480-513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비용

· 산출내역

- 바 닥 면 도색 : 300천원 × 84면(44개소) = 25,200천원
- 안내표시판 설치 : 400천원 × 84면(44개소) = 33,600천원

소 관 부 서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강 명 천
	팀 장	이 미 경
	담 당 자	정 대 용 (480-5132)